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구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2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계약기간	근무예정처	직무내용
전문위원	일반임기제 6급	1명	최초 임용 일로부터 2년	금천구의회 (의회사무국)	-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-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 및 자료의 위원회 제공 -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-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국내외 친선 교류 등 운영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※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**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※ **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**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**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**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자 격 기 준
일반임기제 6급	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)

4. 근무조건

○ 계약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(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

○ 보 수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6급(상당)	76,686천 원	51,098천 원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11. 11(목) ~ 11. 17(수), 09:00~18:00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퀵서비스,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

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(☎ 02-2627-2742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)

- 접 수 처 : 금천구 의회사무국(금천구의회 4층)

· 주 소 : (08611)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, 4층 금천구의회사무국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금천구 수입증지(1층 통합민원실 7번창구,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 접 시 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 시	장 소	
2021. 11. 24(수)	2021. 12. 1(수)	금천구의회 소회의실 (4층)	2021. 12. 3(금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(다만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(1차 합격자에 한함)
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토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, 기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면접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금천구의회/금천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

○ 응시원서(첨부1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(7,000원)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
- ※ 구입장소 :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7번 창구/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(우체국 판매) 동봉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첨부2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자기소개서(첨부3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5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6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7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하위증서(석사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첨부8호 서식) 1부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9호 서식) 1부
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적용을 받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기간 중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(송달비용은 청구인 부담)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구의회사무국(☎02-2627-274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